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장애인) 제한경쟁채용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장애인) 제한경쟁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, 11, 1,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채용 분야 · 인원 및 주요업무

직군	직급	분야	인원	주요업무
	합 계		5	
행정	クコフト	행정	3	• 전산, 고객민원/문의 대응 업무 등
영업	7급갑	영업	2	• 매출관리, 실적관리 업무 등

2. 자격요건

-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제주특별자치도민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 -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 -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자
-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분 (인성 / 창조성 / 전문성 / Globality)
-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

3. 가점 및 문제 출제 수준

【가점】(※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자에 한함)

구 분	대 상	가 점
공 통	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	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	- 다문화 가정/북한이탈주민	적성검사에 한해 만점의 5%

※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% 이상 득점 시 반영하되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40%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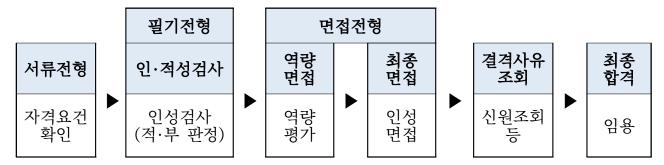
(단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의 경우,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)

【문제출제수준】

• 7급갑: 초대졸 졸업 수준

4. 전형절차 <※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>

○ 전형진행 절차



O 전형별 합격배수 선발 기준

서류전형	인·적성검사	역량면접	최종면접
적격자 전원	5배수이내	3배수이내	1배수

※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 충원을 위하여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

O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∘ 서류전형(자격요건 확인): 적·부 판정

- 판정기준: 지원분야 자격 적격인 자

• 인성검사: 적·부 판정 (판정기준: 성격유형 및 부적응위험도 모두 적격인 자)

성격	[‡] 유형	부적응 위험도	
A 등급		양호	
B 등급	7) 74	주의	적격
C 등급	' '		
M 등급			
X 등급			
D 등급			
R 등급	부적격	위험	부적격
E 등급			

• 적성검사

- 합격기준: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
- 검사항목: 언어영역, 수리영역, 추리영역, 공간지각능력

• 역량면접

-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
- 평가기준: 적합성(조직, 직무, 동기), 신(身), 언(言), 서(書), 판(判)

5. 최종합격자 선정

- 최종 면접전형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 - 평가기준: 공사인으로서의 사고와 자세, 청렴도 및 신뢰도, 책임감 및 적극성, 협업성 및 희생정신, 용모·예의·품행 등
- O 최종 면접전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
 - ①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순
 - ② 역량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

6. 공고 및 원서접수

O 공고기간 : 2019. 11. 1. ~ 11. 11. (예정)

O 접수기간 : 2019. 11. 1. ~ 11. 11. 18시까지 (예정)

O 접수방법 : 온라인(www.jpdc.co.kr) 접수

※ 온라인 원서 접수만 인정 (우편, 이메일, 직접방문 등 불가)

7. 접수서류

- 전형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
- O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
 - 전형별 제출서류

전 형	대 상	제출서류	비고
인·적성 검사 (11. 16. 예정)	해당자 (전 분야)	。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	자격요건 확인용
		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확인서	전형단계별 가점 확인용
		다문화가정/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	적성검사 가점 확인용

- 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까지 취득분에 한함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 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

8. 기타 유의사항

- <u>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</u>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.
- **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**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
-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.
-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하되,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 인 경우 인·적성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-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수습 후 발령 시 분야 및 직군 변경 가능
- 수습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, 수습기간 내 공사에서 지정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,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 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-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O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- O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"채용문의"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(☎ 064-780-3516)으로 문의
- 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9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 및 접수	11. 1.(금) ~ 11. 11.(월) 예정	
인・적성검사	11. 16.(토) 예정	
역량면접	11. 23.(토) 예정	
최종면접	11. 30.(토) 예정	
합격예비자 발표	12. 4.(수) 예정	
임용	12. 30.(월) 예정	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으로, <mark>응시자 및 각 전형별</mark>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·게시함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의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의2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7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7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- 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